

인터넷상의 무단 개인정보 탐지 및 공개행위(이른바 ‘사이버 킬’)와 수사기관의 公報에 대한 小考*

이 승 준**

국 | 문 | 조 | 록

이른바 ‘사이버 킬’, 즉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 무단탐지 및 공개행위’는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면서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진지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른바 개똥녀, K대 패륜녀 등 이른바 ‘00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집중 현상은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와 공개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처벌됨은 검토한 바와 같으나, 그 대상이 범죄자일 경우 신상정보의 유출이 책임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관련 주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는 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本稿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 무단탐지 및 공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수사기관의 공보행위가 인터넷상의 무단 개인정보 탐지 및 공개에 원인을 제공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인터넷상의 개인신상정보 무단탐지 및 공개행위’의 책임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시도하는 일부 이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배려와 준비가 없는 공보활동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킬’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무단탐지 및 공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ISP 및 언론의 자정노력이 동반됨은 물론 수사기관의 공보가이드라인의 구체화, 실효성 있는 공보채널의 일원화, 비공식채널을 통한 언론의 접근차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 등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주제어 : 사이버 킬,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 책임주의, 피해자, 공보활동,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본 논문은 청주지역 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2010.11)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 법학박사

I. 문제의 제기

얼마 전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여교사 사건이 한동안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데 이 여교사의 행위가 윤리적·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채 논의도 되기 전에, 이를 당연시 또는 무관하다는 전제에서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촉발된 사건 관련자의 신상정보 유포가 오히려 더 큰 이슈(issue)가 되었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탐지 및 공개행위는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면서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진지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개똥녀, K대 패뉘녀 등 이른바 ‘OO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집중 현상은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와 공개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정보의 수집과 대량 전달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대상이 범죄자일 경우 신상정보의 유출이 범치국가원리와 책임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관련 주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는 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사이버 킬’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배포 등의 公報行爲가 인터넷상의 무단 개인정보 탐지 및 공개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언론 공보활동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이른바 '사이버 킬'의 심각성과 원인

1. '사이버 킬'의 실례를 통해 본 심각성

1) 중학교 여교사 사건¹⁾

최근 발생한 중학교 여교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일련의 '사이버 킬' 사안들 중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발단은 조사를 담당한 관할 경찰서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수사관할이었던 서울 OO경찰서에서 “△△동 모 중학교 여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문자 메시지를 본 B모군의 부모가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사건은 일부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일간지의 인터넷 뉴스로 포털 사이트에 오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믿기 힘든 해프닝 정도로 그치는 듯 했다. 그런데 보도 당일 이후, 사건 당사자가 '△△동 소재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까지 특정되면서 네티즌들은 '네티즌수사대', '디깰' 등을 통해서 해당 여교사의 이른바 '신상털기'에 나섰다. 미니홈페이지에 있던 여교사와 제자들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교사와 제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이 지속되었고, 해당 학교로 지목된 중학교의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급기야 여교사 남편의 직업과 이름, 자녀들의 사진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에 이르렀다.²⁾

이러한 피해는 과거에도 경험할 수 있었다. 삼성 X파일사건, 각종 OO녀 사건에서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를 네티즌들은 자행해 왔다. 그리고 위의 사건에서 우려할 만한 것은 일부 학생 및 네티즌의 '부럽다'는 반응이었다. 당사자인 교사의 사진이 유출된 웹페이지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왜곡된 성적 가치관의 표출로 인한 무분별한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다.

1)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진 사건으로, 자녀를 둔 유부녀인 여교사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여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해당 여교사는 학교에서 해임되었다.

2)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만 직업과 연령이 비슷한 인물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런데 이 중학교 여교사 사건의 경우, 윤리적 비난은 차치하고 행위만을 판단한다면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밖에 없다.³⁾ 바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본 사건의 裏面이다. 즉 문제의 여교사가 법적으로 비난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출되어 형사제재로서의 형벌보다 더한 사회적 형벌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2)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2004년 12월 울산의 한 여중생이 밀양거주 남자 고교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은 같은 달 7일 울산지방경찰청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지역 언론사발로 '고교생 41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송고되었다. 그리고 이 기사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에 게시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 최상위로 조회되었고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문제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었다는 점이며⁴⁾,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를 통한 '사이버 킬'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⁵⁾ 가해자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그 주변 인물들이 미니홈페이지 등에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가해자들이 억울하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일부 네티즌들도 피해 여중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였다.⁶⁾ 이처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신

3) 피해 남학생이 13세 미만의 부녀가 아니었으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의 객체도 아니며,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다고 밝혀졌으므로 여교사에게 위계나 위력을 통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성관계에 대한 대가의 지급 내지 성매수가 없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는 등 현행법상 처벌하기 쉽지 않다. 물론 배우자의 간통죄 고소가 있을 경우 간통죄의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전혀 다른 측면의 문제라고 하겠다.

4) 미성년 가해자의 수, 범행기간 및 피해사실의 협박을 통한 각종 변태적 성행위의 강요라는 범죄수법에서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5) 물론 이 사건은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사이버 킬'도 자행되었으며, 결국 '사이버 킬'은 또다른 '사이버 킬'을 낳아 피해의 연쇄고리 형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6) 한 네티즌은 밀양교육청 게시판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비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서 "5개월에 거쳐 '성관계'를 가진 건 확실하지만 그 애들이 XXX다. 밀양에 와서 한번 당했으면 대신 안 올 것이지"라고 하였다(동아닷컴, 2004.12.10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74791> 참조).

원노출을 포함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과 공개과정에서, 2차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속적인 자살 충동을 느껴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순수한 사적 비밀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⁷⁾ 오히려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으로 외적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물론, 생명권의 침해에 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⁸⁾ 2004년 당시에는 아직 ‘사이버 킬’이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은 시점이나, 사이버공간 내에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단으로 탐지하여 공개 또는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대표적 ‘사이버 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범죄 발생으로 인한 1차 피해발생과 함께 피해자⁹⁾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형사절차에 편입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수사기관의 공보활동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30%에 이르며, 그중 90%가 2차 피해를 범죄로 인한 피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일본의 한 연구결과¹⁰⁾의 의미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범죄인이 아니라, 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처럼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과잉공보와 그것을 기초로 한 매스컴의 보도는 피해자의 명예와 그 가족들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심리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의혹과 관심을 키우게 만드는 수사기관의 공보활동으로 수사사건 관련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¹¹⁾

7) 김용세, *피해자학*(제3판), 형설출판사, 2009, 180면

8) 피해자는 가출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사실상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이처럼 광의로 파악한다면 직접적 피해자 외에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간접적 피해자 역시 실질적 보호 및 구조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UN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역시 피해자를 정신적 피해와 감정적 고통에 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A. Victims of Crime 1. 참조).

10) 宮澤浩一/田口守一/高橋則夫, *犯罪被害者の研究*, 成文堂, 1996, 137頁.

11) 유명 연예인이었던 A씨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자녀들과 함께 동반 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 잊혀질 때쯤에야 다시 연예계로 복귀할 수 있었다. 만일 이 사건에서

2. ‘사이버 킬’의 용어 재정립과 처벌 구성요건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사이버 킬’은 사이버공간 내에서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단으로 탐지하여 공개 또는 전파함으로써 물리적 살인이 아니라, 인격적 살인과 유사한 침해해 가져온다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이는 신상정보의 유출이 가져오는 심각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언론매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로 이해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른바 ‘신상털기’를 통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이 공개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입고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지만, ‘사이버 킬’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생명권을 침해하는 살인죄와 달리 피해자의 외적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사이버 킬’의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¹³⁾ 형사처벌의 고려 대상인 행위책임의 행위에 주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규범현실적으로는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좀 더 깊이 穿鑿해보면, 범죄자의 경우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공개가 법치국가원리와 책임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책임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는 법적 책임이 없으면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때 책임은 성격 책임이나 인격책임이 아니라, 행위책임인 것이다. 인격에 대한 조사는 정의관념이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무의미하며, 행위책임은 법치국가적 이념에서 범죄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할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범죄자의 불법에 대하여

A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실질적 보호 및 구조의 대상일 가족이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12) 네티즌들이 인터넷검색을 통해 찾아 낸 특정인의 신상관련 자료를 무차별적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상털기’(예컨대, 김난도, *트렌트코리아 2011, 미래의 창, 2010, 150면*)를 결과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3) 이하에서는 ‘사이버 킬’이라는 용어를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 무단탐지와 공개’로 표현하기로 한다.

14) Jescheck/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5.Aufl., 1996, 423면* 이하

국가의 형벌을 넘어 사인인 네티즌들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집단적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을 가하는 것은 재판권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관조차 다원적 사회의 대표로서 행위자의 책임을 법적 기준에 따라 量定하여야 할 뿐, 도덕적·윤리적 책임비난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¹⁵⁾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유책한 행위에 대해 법공동체의 이름으로 내린 법적 비난의 형식을 갖는 부인(mißbilligung)이기 때문이다.¹⁶⁾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처벌 구성요건은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¹⁷⁾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事實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인격, 기술, 지능, 학력, 경력은 물론 건강, 신분, 가문 등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모든 가치가 포함된다.¹⁸⁾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통상의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는 의견 표현이라기 보다는 과거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행에 불과한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일반적인 사이버 명예훼손¹⁹⁾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도 있다. 동법 제70조는 “사람을

15) Wessel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5.Aufl., 1995, Rn. 403

16) Wessels, a.a.O. Rn. 403

17) 대판 1997.4.25, 96도2910; 대판 2009.5.28, 2008도8812

18)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보정신판), 박영사, 2008, 187면.

19) 정 원,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16권 2호, 2008.10, 176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 이 규정은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사이버 킬’의 행위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¹⁾ 다만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의 인정이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 비방의 목적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려는 가해의 의사’라고 해석하는 견해²²⁾도 있으나,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²³⁾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반대해석상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며, 비방성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무단 탐지와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의 의사를 포함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²⁴⁾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참조. 본 조문에 대한 분석으로는 정 완, 앞의 논문, 175면 이하 등이 있다.

21) 결과적인 형사책임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여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중학교 여교사 사건에서 “OO중학교 여교사 A”라는 기사와 무관한 웹페이지에 댓글을 단 경우,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에는 해당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에 대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여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없으며, OO중학교에는 실제로 A가 여교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미한 정도의 신상정보의 탐지 및 공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노력에 의해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구별함이 적절하다.

22) 정 완, 앞의 논문, 177면

23) 대판 2001.10.30, 2001도1803; 대판 2009.5.28, 2008도8812

24) 비방의 목적에 관하여, 형법 제309조의 경우 악의의 목적과 동일시하여서는 안 되며,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적 보도행위는 비방성을 내재적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도내용이 고의적으로 진실보도의무와 공익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여 30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박상기,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5, 194면 이하)은 이러한 점에서 경정할 만하다고 하겠다.

3.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원인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원인은 여러 기제의 복합적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선정적 기사를 통한 한견주의식 언론,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과 공개 행위를 흥미로 일삼는 일부 네티즌과, 이를 온라인상에서 방치하는 인터넷 포털(ISP)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공보활동에도 원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원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인터넷 사용자의 왜곡된 공명심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원인을 하나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적 요인과 함께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적 요인 중, 첫 번째 원인으로 일부 네티즌들의 왜곡된 공명심을 들 수 있다. 최근 '네티즌수사대', '디깅' 등의 사이트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신상정보를 터느냐', '얼마나 신상정보 자세히 터느냐'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왜 그 개인이 책임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정보까지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에 대해서는 일단 '털고' 나면 마치 국가 형벌권의 행사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한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네티즌들의 특징인 신상파악과 그 공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 중요 범인의 수사에 대한 단서 제공, 국민의혹의 해소 등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을 넘어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하고,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와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私刑罰시대로 되돌아가는 잘못된 回歸로, 국가형벌권과 수사기관의 존재를 무색케하는 행위로 변질된 것이다.

2) 내재된 집단 폭력성과 오도된 관음증의 발현

최근의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는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OO녀’에 대한 비정상적인 사회적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OO녀’가 등장할 때마다 신상을 공개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²⁵⁾ 그런데 누구도 인터넷 집단폭력이 ‘OO녀’의 이른바 패륜행위보다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대상들도 새로운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의 익명성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내재된 폭력성을 촉발, 확대시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실에서의 개별 폭력성 대신 사이버공간에서의 집단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한편 여성에 대한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가 先行 내지 横行하는 것은, 남성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보다는 여성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유출, 공개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일종의 관음증적 행태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학교 여교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이 사건 관련자인 경우 성적 대상으로 비하시키는 構造的 變態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예방책임과 적형법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형법이 행위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

3) 검색프로그램의 발전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해태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의 주요 통로는 구글(google)이다. 구글 검색엔진은 뛰어난 검색능력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신상정보 파악의 대표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구글은 페이지랭크(page rank)기능과 앵커(anchor text)기능을 통해 기타의 검색엔진보다 매우 강력한 검색능력을 지니고 있고, 전달된 링크를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탐지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된 자료들은 저장(cash)된 형태로 남아있어 원본 사이트의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는 이상 여

25) 재학 중인 대학 내의 도서관에서 어머니 연배의 환경미화원에게 폭언을 한 K대 패륜녀의 경우, 사진과 소속학과, 성명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며, 네티즌들에 의해 미니홈페이지가 욕설로 도배되는 등 집단공격을 당하였다.

전히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²⁶⁾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의 검색능력 발달은 개인의 이름이나, 아이디만 있더라도 웹사이트의 게시글, 동영상 등을 찾을 수 있게 만들고, 이는 다시 개인 미니홈페이지의 주소와 블로그의 주소를 탐지할 수 있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신상정보의 조합을 통한 공개적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검색엔진인 구글과 달리, 개인 신상정보의 탐지와 공개에 초점을 맞춘 코글(cogle)²⁷⁾, '신상털기 5.0' 프로그램 등도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신상정보의 파악을 위한 이러한 사이트들은 직접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요 미니홈페이지 검색기능과 게임사이트의 아이디 검색 기능,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 및 게시글 검색기능의 링크를 통해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를 용이·확대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탐지된 개인 정보가 확대, 유출되어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에 까지 이르는 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도 있다. 실시간 검색을 통해 일반인이 비정상적 사유로 상위검색이 될 경우, 검색차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써 일부 네티즌들의 '신상털기'가 전면적인 '사이버 킬'로 악화되는 것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른바 ISP가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 개인정보의 무단 탐지와 공개가 자신의 서버상에서 이루어지고, 검색순위의 상위랭크 등 인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증인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인정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물론 ISP가 이용자들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형사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러한 행위를 인식하고, 기술적으로 통제·차단할 수 있으며, 그러한 차단이 법적 공동체에서

26) <http://www.google.com/support/webmasters/bin/answer.py?hl=kr&answer=164734&from=156094&rd=1> 참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의 완전한 삭제는 robot.txt를 이용해 구글의 크롤링이나 색인생성을 막거나, noindex 메타태그를 통해 검색결과에 표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7)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의 아이디 검색, 블로그 아이디 검색, 네이버 뉴스의 댓글 검색, 미니홈페이지 웹사이트인 싸이월드 아이디 검색, ip 검색,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군주, 마구마구의 아이디 검색 등 20여가지의 검색 항목을 구비하여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이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아이디로 쓴다", "온라인 쇼핑몰의 게시글에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다"는 등의 신상털기의 팁을 제공하고 있다.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²⁸⁾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정보 소유자인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EU 등 유럽국가에서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조류에 비추본다면,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방지를 위한 ISP의 책임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어야 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²⁹⁾

4) 한견주의식 언론

신문윤리실천요강³⁰⁾의 보도준칙에 의하면,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사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³¹⁾ 또한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

28) 대관 2009.4.16, 2008다53812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부작위에 의한 방조 인정여부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9) 과거 일부의 견해(서보학,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21권 3호, 33면)는 ISP가 스스로 위험원을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인터넷접속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해정보유포 방지에 대한 어떠한 보증인적 의무를 지을수 없으며, 특정 유해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용자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인터넷서비스의 범죄적 남용결과를 ISP에게 결과귀속을 시킬 수 없으며, 인터넷상의 무수히 많은 정보의 양을 고려할 때 유해한 유해한 정보에의 접속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정보과학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보안시스템의 향상은 과거와는 달리 기술적 통제차단의 기대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ISP의 형사책임 인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0)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리실천요강으로 1957. 4. 7에 제정되어 2009. 3. 4 일부개정되었다.

31) 위 요강 제3조 참조.

는 점을 유의하여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도 안된다.³²⁾ 이와 더불어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 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도 안된다.³³⁾

그러나 이러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불구하고, 범죄보도를 둘러싼 현실은 매우 거리가 있다. 보도매체들이 구독률 및 조회수 경쟁에 매몰되어, 범죄보도시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여과없이 내보내는 것을 넘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수사기관이라는 제한된 취재 채널하에서, 상업성과 이익추구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언론매체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풍토하에서의 수직적 편집구조를 통한 뉴스의 설정은 선정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간과한 채 이뤄지는, 한건주의 위주의 보도관행은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비공식 채널로 이용하게 만들고, 공식적인 공보활동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더욱이 현행 수사기관별 출입기자 시스템은 이러한 비공식 통로를 통한 사건관계인의 수사자료 유출의 차단을 어렵게 만든다.

Ⅲ.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

1. 수사기관의 공보활동의 실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원인은 단순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며, 다수 당사자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 확

32) 위 요강 제7조 참조. 독일의 경우 무죄추정과 관련하여 살인자와 테러리스트로 누명을 쓴 여대생이 Bild지에 기사가 나가자 석방 후 5만 마르크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수사 초기 언론의 범죄보도에 대해 수사의 발전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OLG Düsseldorf, 20.06.1979 15 U 199/79).

33) 위 요강 제11조 참조.

대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의 최초 원인 제공은 수사기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매체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수사기관의 범죄 보도에는 역효과(reverse effect)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이후 확립된 국가의 독점적 징벌권 행사 관점에서의 형사사법제도는 19세기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1950년대 서구 제국의 지속적인 범죄율의 상승으로 문제점이 표출되자 다양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나타난 1960년대, 70년대의 자유주의, 진보주의의 유행은 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무게중심을 옮겨 놓았다. 한편 과거 전통적인 형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주변인(Randfigur)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제협력, 공적 보상제도의 도입, 피해자운동의 확산 등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입법적, 형사사법적 관심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피해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피해자 지위의 변화는 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공보활동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³⁴⁾

현재 검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774호)과, 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563호), 인권 수사 매뉴얼도 이러한 변화된 흐름을 반영하여 수사사건 공보의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검찰의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의하면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되게 한다는 목적하에, 동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공보 외에는 수사사건(수사,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³⁵⁾ 구체적인 수사공보의 기준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보담당관만이 수사 공보를 할 수 있도록 주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중국처분을 한 사건과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은 기소 전에는 내용

34)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2010.4.15 법률 제10258호)에서도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동법 제22조 참조.

35)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하 ‘동 준칙’이라 함) 1조 내지 5조 참조.

의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⁶⁾ 또한 수사사건의 공개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도 서식에 의한 공보자료의 배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구두브리핑은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³⁷⁾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확하게 공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 또는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며,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나이와 직업 공개가능)를 제외하고는 영문 알파벳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³⁸⁾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수사 단계별로 허용된 범위내에 한한다.³⁹⁾ 만약 공개허용정보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해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⁴⁰⁾ 이와 반대로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등은 공개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공보활동에 있어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보담당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수사보안을 규정하고 있다.⁴¹⁾

다음으로 경찰의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의하면 관서별로 홍보책임자를 지정하여, 언론홍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책임자가 전담하며, 보도자료 배포나 인터뷰 및 브리핑은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⁴²⁾ 또한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공판청구 전에는 수사사건에 대하여 언론공

36) 동 준칙 제7조 내지 9조 참조.

37) 동 준칙 11조 내지 12조 참조.

38) 예외적으로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을 위해 이미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어 대중이 알게된 경우나 사건 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동 준칙 13조 내지17조 참조)

39) 수사종결 단계에서 불기소된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죄명, 처분 주문, 종국처분 전에 혐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의 혐의사실, 종국처분 전후로 오보가 실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처분 이유가 공개 허용범위이다(동 준칙 18조 참조).

40) 동 준칙 18조 참조.

41) 동 준칙 제28조 내지 제29조 참조.

개를 하지 못하나,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언론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못한다.⁴³⁾

통상의 보도자료는 이러한 관련규정과 달리 “□ 제목 : K고등학교 이사장 불구속 기소, □ 사건개요 …, □ 피의자 인적사항 : LOO(77세, H학원 이사장), H학원은 서울 가나구 소재 K고등학교의 재단임. □ 기소요지 : 1.사기 : 제3자를 형식상 업주로 내세워 급식업체를 설립하고 사실상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위 고등학교와 급식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비를 속이는 방법으로 급식대금 중 약 5억 7천만원 편취 2.배임수죄 … 3.업무상 횡령 …” 등으로 사건 관련자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다.⁴⁴⁾

2. 수사기관의 공보시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1)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현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수사사건의 공보 및 인권보호조치 등과 관련해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⁴⁵⁾ 즉 가해자의 연령, 직업, 가족의 유무, 범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성별, 가족의 유무, 범죄의 종류, 범행수법 등에 따른 세부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재 네티즌들의 개인정보 수집능력과 행태를 고려한다면, 개인 신상정보라는 모자이크의 일부가 수사기관의 공보활동에 의해 제공된

4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하 동 규칙이라 함) 82조 참조.

43) 동 직무규칙 83조 내지 84조 참조.

44) 수사기관의 범죄보도는 자칫 피의사실공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하급심(서울 고법 1996.2.27 95나24946) 및 대법원(대법원 1998.7.14, 96다17257)에서 위법성 조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수사기관의 공보와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부분은 지면관계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5) 동 준칙 제5조 참조.

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유출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⁴⁶⁾라는 막연한 당위성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체계화 및 분류작업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필요하다.

범죄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직업인지 여부, 살인, 강간 등의 흉악범인지 여부, 미성년의 자녀나 노부모 등 가족관계, 피해 내지 손해의 규모, 범행기담의 정도로 구분하여 인적 사항을 추단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지 여부, 여성인지 여부, 학생인지 여부, 미성년의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관계, 강간피해의 동반 여부, 가족이 비공적 인물인지 여부, 가학적·변태적 침해 또는 잔혹한 수법의 여부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를 較量하여야 한다.⁴⁷⁾

이와 더불어 수사공보준칙상 예외적 공개 사유인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 자칫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라는 필요성은 실제 공보활동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범죄자와 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범죄 보도자료 제공 채널의 실효성 있는 일원화

현재 검찰의 경우 공보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1년에 한번 이상 공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이 정도의 공보교육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공보담당관 내지 홍보책임자의 임명이 직위에 따른 형식적 임명이라면

46) 경찰청, 인권수사 매뉴얼, 2006, 165면 참조

47) 이를 통해 실제 공보자료를 수정해 보면 “제목 : ‘K고등학교 이사장 불구속 기소, 피의자 인적사항 : LOO(77세, S학원 이사장), H학원은 서울 가나구 소재 K고등학교의 재단임. 기소요지 : 1.사기 ... 2.배입수뢰 ... 3.업무상 횡령 ...”의 보도자료는 “A고등학교 이사장 불구속 기소, 피의자 인적사항 : BOO(77세, C학원 이사장), C학원은 서울 가나구 소재 D고등학교의 재단임. 기소요지 : 1.사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48) 동 준칙 31조 참조.

이는 오히려 부적절한 공보활동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공보담당관 이외의 자에 의한 공보가 이뤄질 경우 이 정도의 공보교육만으로 적절한 공보수준과 수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검사 또는 경찰관이 공보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공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만 한다. 연 1-2회의 형식적 교육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공보담당관과 홍보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보자료를 작성하는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형사)과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그를 통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수사 초기 초래되는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도 자료 배포시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다 적극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하다. 검사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상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사건의 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⁴⁹⁾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상당 부분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수사진행의 시점상 당연한 귀결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검·경 지휘구조하에서 검사는 사건관계인들의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탐지되고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수사지휘의 범위 내에 어느 정도의 공보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공보시 검찰 송치 전 사전 조율을 통해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공식 채널을 통한 언론의 접근 차단

언론 매체도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상업성과 수익성을 포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발행부수, 조회수 등에 대한 언론매체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상황에

49) 동 준칙 제4조 2항

서 언론사 내부의 수직적 편집구조는 국민의 알권리, 정보이익과 형사절차의 공정성보다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를 묵인하고서라도 선정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뉴스의 생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개별 언론은 수사기관 종사자들 중 공식 공보담당관이나 홍보책임자 이외의 실무 수사진들에게서 평소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정보를 취득해 낼 수밖에 없다. 나아가 1차적으로 나오는 공식적 공보자료를 통해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찾아가 독자적인 취재원을 생성해낸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공식적인 공보활동을 통해 차단된 개인정보의 유출은 무의미하게 되고, 1차적 공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단서를 제공해준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공보행위시에는 언론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비공식적인 공보채널 또는 독립된 취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⁵⁰⁾ 사회적 관심으로 언론의 집중을 받는 사건의 경우, 수사보안 준수를 통한 내부에서의 사건관련 정보의 유출차단과 함께 수사개시 단계부터 중요 참고인 및 피의자, 피해자들에게도 언론의 접근 가능성과 대응요령을 고지함으로써 외부에서의 유출 가능성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⁵¹⁾ 소극적인 수사보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수사공보준칙 제22조 2항에 규정된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 규정을 “사건관계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적극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역시 제85조 [초상권 침해 금지] “경찰관은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시 [초상권

50) EU의 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권리선언(The social rights of victims of crime)에서는 “피해자, 그 가족 및 친구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특히 모든 관련자가 충격에 휩싸이는 범죄 직후에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Victim's rights 10. Protection of privacy a) 및 b) 참조).

51) 2008년 12월 19일 발생한 군포 여대생 실종 피살사건의 경우, 언론매체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전화, 인터뷰 등을 시도하고 그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자, 경기지방경찰청이 ‘미투가자 가족들에 대한 취재 전면 금지 요청’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및 사생활 보호] “경찰관은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 또는 인터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경찰관서 외에서도 언론으로부터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선하여 공식 채널을 통한 공보가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수사기관별 출입기자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4) 규정 준수 의무의 현실화

현재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하여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⁵²⁾ 그런데 조사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다.⁵³⁾ 반면 경찰의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제92조에서 동규칙 위반자에게 일정기간의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등 인권교육만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공보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감찰이 이루어지면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측면에서는 선언적 의미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일단 개인의 신상정보를 추단케 하는 작은 모자이크라도 공보행위시에 제공될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화·구체화된 현재의 수사공보준칙에 대해서도 준칙위반시 제재의 부활 등을 통해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극적인 공보 규정의 준수를 유도해 내야 한다. 아울러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교육 또한 교육수강 후 모니터링, 삼진아우제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52) 동 준칙 제32조.

53) 그러나 과거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대검예규 공보 제195호, 1991. 9. 5)에는 위반시의 조치로 관계법령에 의해 문책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에서는 공보활동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과 자기통제를 마련하였으나, 언론의 반대로 그 내용이 대폭 완화되어 현재의 수사공보준칙에 이르고 있다.

IV. 나아가며

2010년 7월 20일 서해안고속도로 경기 광명역 IC 부근 배수로에서 상당한 재력으로 알려진 40대 여약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서울 OO경찰서가 수사하였으며, 사건 정황과 관련하여 “발견 당시 피해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다”라고 보도되었다.⁵⁴⁾ 이후 피해자의 성이 ‘한’씨이며, 거주지는 양천구 OO동으로, 강도 후 강간을 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 1심에서의 결과는 강간을 위장한 강도로 밝혀졌다.⁵⁵⁾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해자가 강도살인뿐만 아니라,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발견되어 강간 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로 인하여,⁵⁶⁾ 수사 초기에 강간의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간 피해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이미 피해자와 유가족의 주변인들에게는 강간까지 피해사실로 인식된 후로 그 결과가 쉽게 정정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위의 사건이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매체의 추측성 보도로 인한 비극적 결말의 極端的인 사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다행스럽게도 직접적 피해자나 유족 등에 대한 ‘사이버 킬’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⁵⁷⁾ 그럼에도 이 사건은 개인정보의 무단 탐지와 공개가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一考의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의 무단 탐지와 공개행위’가 피공개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하는 정도를 넘어 극단적인 결말까지 초래할 수 있는 불법성을 지닌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일삼는 ‘범죄자’들이 스스로 범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명백한 것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의 무단 탐지와 공개의 책임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시

54) 한국경제 2010.7.26자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2397807>) 등 참조

55) 피의자 신모씨에게는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이모씨에게는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되었다.

56) 국과수의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에서도 강간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2차 부검이 진행되었다.

57)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도하는 일부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배려와 준비가 없는 공보활동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노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방지를 위한 방안은 수사기관의 공보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이고 궁극적인 代案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내려지고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 검토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를 주로 일삼는 사회적 계층이 청소년 내지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범죄성을 조기에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예방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및 경미 저작권위반 사범의 급격한 처벌은 자신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범죄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형사절차 진행의 공포와 합의금 마련의 곤란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과까지 낳은 바 있다. 청소년의 또는 경미한 정도의 개인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에 대한 급격하고 강력한 처벌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전 계도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자가 양산됨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탐지 및 공개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 달성을 고민해야 한다. 처벌에 앞서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무단탐지 및 공개행위의 범죄성 인식의 제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 경찰청, 인권수사 매뉴얼, 2006
김용세, 피해자학(제3판), 형설출판사, 2009
박상기,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5,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보정신판), 박영사, 2008
정 완, 사이버범죄론, 법원사, 2010

논문

- 백윤철,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연구 제1호, 2002
서보학,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12권 3호, 2001
안경옥, 정보화사회에서의 형법의 중요문제와 과제, 인터넷법학회 세미나자료, 2007.6
정 완, 사이버명예훼손피해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피해자학연구 16권 2호, 2008.10
_____,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9권 1호, 2009

외국문헌

- Jescheck/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5.Aufl. 1996
Wessel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5.Aufl., 1995
David S. Wall, CYBER CRIME, polity, 2007
Bert-Jaap Koops/Susan W.Brenner, Cybercrime and Jurisdiction, T·M·C ASSER
PRESS, 2007

- 宮澤浩一/田口守一/高橋則夫, 犯罪被害者の研究, 成文堂, 1996

A Study on Detection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the Information Activity of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Lee, Seung-Jun*

The so-called 'cyber-kill', detection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n recent years, is increasing its frequency and intensity, serious and careful approach is needed. The phenomena of the focus on some girls has revealed that they have had serious side effects, detection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f he is a crime, he subject to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 viewpoint of the culpability principle can lead to severe consequences, in reality, the indelible scars related to peers giving is a serious problem. Moreover, problems of crime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and disclosur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an lead to unexpected result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se issues, this paper is focused on whether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provide the cause for detection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rather than a punishment for so-called cyber-kill. Criminal liability for defamation of individuals through the internet are to some users. Nevertheless, without thorough consideration and read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information activities are likely to leave the perpetrators, the victims irreparable injury to all, so the effort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prevent 'cyber-kill' is required.

In this context, to prevent detection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SP, and media efforts of self-purification accompanied

* Professor of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by, law enforcement agencies must embody the information activities guidelines,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of the information activities channel, block access to the media through informal channels and should make education to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include the introduction of the discussion.

❖ Key words : 'cyber-kill', culpability principle, victim, information activities, ducation to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